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
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

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,

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

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,

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관련하여, 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아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여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가 문제되어 조례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.

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일부 반영하여 출석정지 징계의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대외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다만 월정수당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당의 성격과 법 체계상 지나친 제약이라는 의견도 있어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

아무쪼록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!